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44219 부동산임의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10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표은정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[목록1, 2] 2021.07.16. 근저당권			배당요구종기	2025. 5. 20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김윤형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	2020.08.25.		
<p><비고>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 <p>-일괄매각. 제시외 건물 포함 -지적도와 실측경계가 상이하어 인접토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매각이 취소된 적이 있음(한국국토정보공사 경계복원측량결과도를 별지로 첨부. 실선은 지적경계선, 현황선은 붉은 점선으로 표시) -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진입로로 확인되는 도로 부지인 송내동 418-22, 418-23, 418-28, 418-33 공유자 김태영 지분에 대해 "대한민국 법원/대국민서비스/고고/회생 파산 자산매각안내/ 공고게시판"에서 부동산 매각 공고증임(관련하여 제출기한, 금액, 담당 등 공고문 확인요망)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44219

[물건 1] 1.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18-21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32번길 29
위 지상
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
슬래브지붕 2층 주택 (2가구)
1층 117.42㎡
2층 80.74㎡(1층, 2층
1가구임)
지하 123.98㎡(1가구)
내역: 지하-철근콘크리트조
1층,2층-조적조

2.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18-21
대 600㎡

제시외 2-1 창고 등 샷시 3.78㎡
2-2 계단실 조적조 6㎡
2-3 창고 등 샷시조, 샷시지붕 6㎡
2-4 테라스 목재 및 파이프조 9㎡
2-5 창고 등 조적조 46.4㎡
2-6 수목 및 조경석 일체 - -㎡

감정평가액 1,524,873,640
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12	1,524,873,640	152,487,400
2회	2026.04.14	1,067,412,000	106,741,200
3회	2026.05.21	747,188,000	74,718,800
4회	2026.06.23	523,032,000	52,303,200

-일괄매각. 제시외 건물 포함
-지적도와 실측경계가 상이하여 인접토지와 중복되는
부분이 있어 매각이 취소된 적이 있음



시
구
면

도
면

도
면

신
등
이
확
전
규
화
동
정

측량원도 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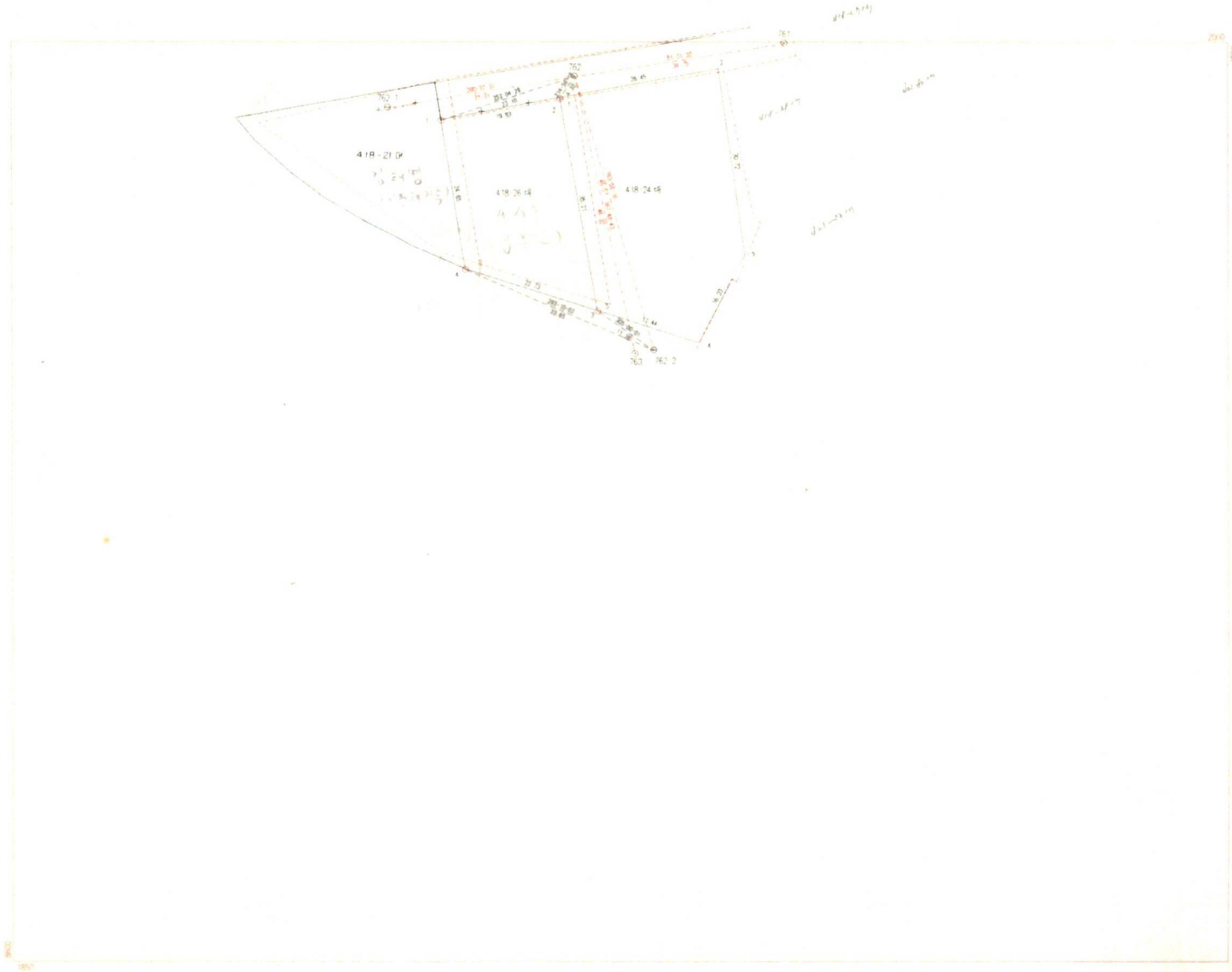
호 (지적도 제 호)

제 호

축척

0.0분의 1

도해신축	신 축 량	용도지역
	보정계수	



구분	구분	구분	구분	구분	구분	구분	구분	구분	구분

측량원도	측량원도	도	면
작성 일자	작성 일자	발	과

측량 19 년 월 일 대한지적공사 지사 출장소 지적기사 급

감사 19 년 월 일 시·군·구 지적기사 급

1140010298